

제415회 국회(임시회)

제 4 1 5 회 (임 시 회) 제 2 차
법 제 사 법 위 원 회
의 결 요 구 자 료
(입 법 청 문 회 관 련)
답 변 서

2024. 6.

법 제 처

- 목 차 -

I . 전 현 희 위 원

1.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처 의견	1
2. 최근 10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부처 의견	2
3. 수사 중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의결 관련 부처 의견	3
4.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대 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처 의견	4
5. 대통령이 새로 의결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위헌 및 위법성에 대한 부처 의견	5

전현희 위원

1.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처 의견

< 담당자: 법제정책총괄과 김진주 서기관 ☎ 044-200-6562 >

- 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
이므로, 이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가 제출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
주시기 바랍니다.

2. 최근 10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부처 의견

< 담당자: 법제정책총괄과 김진주 서기관 ☎ 044-200-6562 >

□ 최근 10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4건의 특검법에 대하여 정부는 헌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3건은 공포하고, 1건은 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.

구분	제명	공포/재의 일자
1	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	2016. 11. 22.
2	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	2018. 5. 29.
3	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	2022. 4. 26.
4	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	2024. 5. 21.

3. 수사 중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의결 관련 부처 의견

< 담당자: 법제정책총괄과 김진주 서기관 ☎ 044-200-6562 >

☐ 특검법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가 제출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
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처 의견

< 담당자: 법제정책총괄과 김진주 서기관 ☎ 044-200-6562 >

- 헌법 제5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
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
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의
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합니다.

5. 대통령이 새로 의결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위헌 및 위법성에 대한 부처 의견

< 담당자: 법제정책총괄과 김진주 서기관 ☎ 044-200-6562 >

- 헌법 제5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.